

2011 양묘장 기반시설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2011. 3



동부푸른도시사업소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1 사업명 : 2011 양묘장 기반시설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1.2 사업개요

- 관수시설 정비 : 갈매양묘장 1,000m, 연평양묘장 1,500m
- 정문설치 : 사능양묘장 1식

1.3 사업목적

- 갈매, 연평양묘장내 배수로 정비 및 관수시설을 정비하여 집중호우 시 양묘장 침수를 예방 및 적기관수와, 사능양묘장의 출입로를 변경하여 양묘생산 및 공급에 이상이 없도록 하고자 함

1.4 과업의 범위

- 시간적 범위

가) 목표연도 : 2011년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일

- 내용적 범위

가) 실시설계 1식

- 공간적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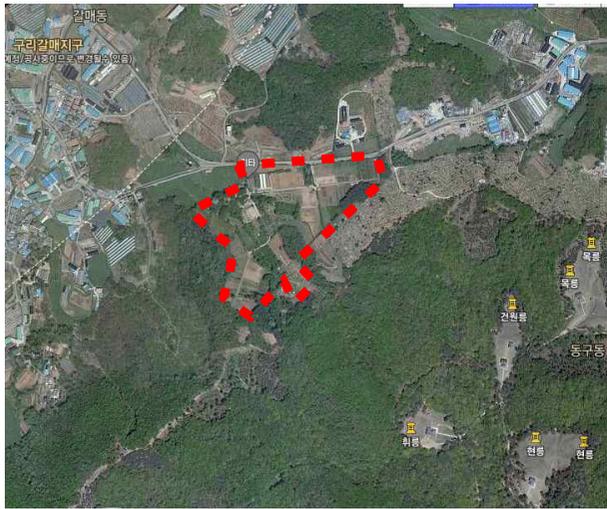
가)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674(사능양묘장)
-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387-15(갈매양묘장)
-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809-1(연평양묘장)

위 치 도



사능양묘장 항공사진



갈매양묘장 항공사진



연평양묘장 항공사진

1.5 공사개요

가. 상수공

- 상수관 (내충격수도관)

HI-3P지관 D75 : 853m, HI-3P직관 D50 : 816.5m, HI-3P지관 D25 : 105.5m,

나. 시설물공

- 능형망웁스 6경간, 목재출입문-1EA

1.6 주요자재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비고
내충격수도관	D75	m	853	-
	D50	m	816.5	-
	D25	m	105.5	-

2. 시 방 서

시 방 서

2.1 본 공사는 설계도서, 특별 및 일반시방서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및 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가.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나.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다. 도 로 교 표준시방서

라. 하수도 시설기준

마. 상수도 시설기준

바. 상하수도공사 표준시방서

사. 건설기술 관리법 및 관계법령

2.2 현장확인

현장 대리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3 설계서, 시방서,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설계서, 시방서,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공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4 이 의

설계서, 시방서, 도면등에 대하여 불분명하거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사착공 전에 감독관에게 신청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도급자가 사시공에 있어 소정의 설계로 시공하기 곤란할 때 또는 그보다 우수한 방법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 제출서류

가. 계약서, 착공계, 예정공정표, 공사내역서 현장대리인계등은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한다.

나. (가)항이외의 도서에 대하여는 현장감독관에 제출한다.

2.6 지시사항은 엄수

감독관의 공사시공상 필요한 지시사항은 도급자의 현장대리인계에게 지시하며 이때 도급자는 지시사항을 그 공사에 종사하는 전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2.7 종사자 명부제출

도급자는 계약직후 당해 공사에 종사한 직원의 명부 (공사경력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 공사기간중 직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8 직원의 자격

감독관은 도급자가 고용하는 공사종사자가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때에는 즉시 그와 교체 또는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2.9 예정공정표 및 예정수량표

도급자는 공사착공전에 전체공사에 대한 시공의 순서, 방법을 기입한 예정공정표 (PERT/CPM), 및 지급품, 대여품, 월별사용예정표, 월별기성 예정표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0 월보 및 일보

가. 익월의 상세예정공정표, 예정 수량표등을 매월 2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나. 전항의 예정공정표에 대한 실시표 작업종사자의 직종별 취업일보 및 월보를 익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 별도로 정하는 작업예정표, 작업일보는 매일 제출해야 한다.

2.11 시공계획서 제출 및 공정관리

현장대리인은 착공후 5일 이내에 공사 세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표지판을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가. 공사안내판

나. 측정표지판(60m 간격)

다. 도로표지판

라. 준공표지판

2.12 품질관리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자격있는 시험사를 선정하여 현장에 주재시켜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품질관리에 필요한 작업과정은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고 성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품질관리에 따른 시험방법은 KS시험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고 시험빈도는 건설공사조사 및 시험규정 제 3장 관리시험표에 의거 시행한다.

2.13 시공관리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 시방기준에 따라 소정의 규격으로 시공하여야 하고, 규격 및 품질확인을 감독관에게 받아야 하며, 또한 감독관의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시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14 연도대책

가. 공사시공에 있어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내지는 불편이 없도록 항상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나. 부근 거주자에게 공사의 내용 (시공방법, 시간, 장소등)을 사전에 주지시켜 관계인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다. 공사시공중 연도구조물 기타 변경이 예상될 때 공사착수전에 그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도면, 스케치, 사진)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그의 보호대책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 공사시행중 변경이 생길때는 그 변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자료(사진, 변형측정도 등)를

그때 그때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연도 구조물 기타 제삼자에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2.15 소음방지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항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중에 피해가 없도록하며 소음,진동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2.16 시공에 관한 대외교섭

공사시공에 있어 대외적으로 교섭처리할 사항은 원칙으로 도급자가 행해야 한다.

2.17 특허권등의 사용

공사시행에 있어 특허권, 기타 제삼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시공방법 및 재료등을 사용할 때에는 도급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18 안전관리

공사시공에 앞서 노동안전위생 규칙등의 법규에 충실해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조직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19 교통과 보안

가. 공사현장에서는 기존시설물, 지하매설물, 교통 및 공중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또한 그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노면을 점용하는 공사의 시공기간 및 시공구간은 관리자 및 경찰서의 허가조건에 따를 것이며 구획범위를 한정시켜 시공해야한다.

다. 공사구역내에 출입하는 공사용 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지휘유도를 전담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을 해야 한다.

라. 공사구역내에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구조물, 노면복공, 흙막이공, 매설물등의 이상을 조사할 것이며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의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감독관,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마. 민간인 토지내에서의 공사장소 지상설비 등으로 인하여 통행자에게 위험을 주는 일이 있을 때에는 "설계도, 표준도"에 의하여 가설물

타리, 철망 등의 보안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작업중 공중에 지장을 줄수 있는 곳에서는 작업구역 주위에 이동책 및 보안책을 설치해야 한다.

바.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지 못한다.

단,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사전에 도로관리자, 소관경찰서 및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 정돈해야 한다.

사. 공사 중에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 중에 돌발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재료는 항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비치해야 하며 그의 소재를 종업원에게 항시 주지시켜야 한다.

아. 공사시공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적절한 응급조치를 해야 하며 동시에 감독관 또는 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사고의 원인, 경과, 피해내용에 대하여는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2.20 시공의 확인 및 검사

특별히 지시받은 작업에 대하여는 시공의 확인과 검사를 필하지 않으면 다음 작업을 시작할 수 없다.

2.21 공사 사진제출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 동일방향으로 촬영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사진

나. 준공사진

다. 공정사진(매월 1회)

라. 공사기록사진 : 공사진행을 촬영하고 사진첩을 3부 작성하여 제출

마. 사진규격 : 5 " × 7 "

2.22 중기 및 기계기구류

감독관이 지시하는 기계기구에 대하여는 그의 품명, 성능, 수량등을 기재한 조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고 철수시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라야 한다.

2.23 기타사항

도급자는 보안관리 규정에 의거 설계도의 보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24 반입자재 사용

가. 본 공사용 반입자재는 수급자 책임하에 감독관의 불출지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용 반입자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규정에 미달된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2.25 현장발생품

공사 시공으로 발생한 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리 관리하여 감독관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 및 인계하여야 한다.

2.26 공사후의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을 제거하고 뒷정리를 철저히 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27 기 타

가. 수급자는 공사중 수시 시공확인 측량을 실시하여 그 성과를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월별 또는 진도별로 작성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측을 받아야 한다.

나. 본 공사에 있어 준공까지 현장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철저히 정리하여야 하고 특히 안전사고와 민원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서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라. 수급자는 본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원담당 및 용지보상관계 담당자 1인 이상을 지정하여 본 업무가 적극 추진되도록 지원하

여야 한다.

마. 지표면에 노출되지 않은 지하매설물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확인하고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손상을 입혔을 때는 수급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바. 지하매설물 확인 및 협의

수급자는 본 공사 착공에 앞서 지하매설물 (통신 및 전기케이블, 가스관, 송유관, 상수도관, 하수도관등)을 확인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며 지하매설물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해야 한다.

사. 적지복구

골재원 및 토취장 등의 공사용 재료 채취 후 복구를 철저히 하여 허가기관의 검사를 받아 민원발생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3.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공 종	월 별 보 할 (%)	1 개 월						비 고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30일	
상수관로	50							
시설물공	35							
뒷정리	15							
계	100							